

의안번호	2209575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 6. 5.
추계번호	25A2098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회발전특구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1억 9,700만원(연평균 4억 3,900만원)으로 추계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안 제8조)	—	235	—	—	—	235	47
기회발전특구 성과 평가 (안 제21조)	506	364	364	364	364	1,962	392
합 계	506	599	364	364	364	2,197	439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자료 1]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현황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의 발전과 기회발전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 ¹⁾ 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소요되는 금액 중 토지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6조 (지방기업에 대한인력양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8조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²⁾ 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제5항)	의무규정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방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도권 중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 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9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제1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회발전특구의 목적·명칭 및 범위,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개발 및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6	안 제11조 (기회발전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지사가 관계 공무원,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육성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3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5조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6조 (기회발전특구내 연구개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자의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7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³⁾ 등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회발전특구규제샌드박스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11	안 제18조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기회발전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을 둘 수 있음(제1항)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2항) 재단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단지·교육시설·주택단지 등의 조성·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제3항)	재량규정
12	안 제19조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항) 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과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하는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등을 수행(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20조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기회발전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7.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21조 (기회발전특구 성과의 평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함(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음(제2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15	안 제2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⁴⁾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6조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국가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⁵⁾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⁶⁾ 또는 제46조제1항⁷⁾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2항)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제3항)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⁸⁾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제4항) 국가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⁸⁾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서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7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점용료·사용료·비용·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1항)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서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6)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서 생략)

7)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8) 「물품관리법」

제33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생략)

제38조(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41조(대부의 제한)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 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권고·선언적 성격의 책무 규정으로 이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⁹⁾ 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이미 실시 중이므로,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서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참고자료 2] 지방투자 재정지원 사업 현황
3	안 제6조 (지방기업에 대한인력양성지원)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부 시·도에서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사업을 이미 실시 중이므로,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서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참고자료 3] 기회발전특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현황
4	안 제8조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	—
5	안 제9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	시·도지사의 기회발전특구계획 수립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¹⁰⁾ 에 기존재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제정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 호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11조 (기회발전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	각 시·도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사업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위촉 위원에 대한 수당이나 기타 협의체 활동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도마다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종류와 협의체의 논의 및 활동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7	안 제13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안의 취지에 따른 세제 지원이 이미 실시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서 추가적인 재정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참고자료 4] 기회발전특구 조세 지원 현황
8	안 제15조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기회발전특구의 특성별로 사업 수요가 다르고 개발사업 ¹¹⁾ 의 정의 에 포함되는 사업 또한 다양하여 각 특구별 사업 의 종류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 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현재 재정 지원이 실시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사업 1개이며, 2025년 예산은 56억 5,000만원임 ¹²⁾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회발전특구를 운영 중인 12개 시·도*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실시 중인 기존 재정 지원 사업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였음 ¹³⁾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전북특별자치도는 자료 미제출)

1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이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 재정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사업명-내역	사업 개요	2025 예산(추경)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		5,650
	- 구)탐라대학교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4동 ○ 철거공사 감리용역 1식	3,150
	- 하원테크노캠퍼스 신규 전력공급 시설분담금	○ 신규 전력공급 시설분담금(14,000kw)	2,5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16조 (기회발전특구내 연구개발 지원)	×	기회발전특구에서 실시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개발을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원 기준이나 단가, 한도 등이 정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재원 추가 투입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회발전특구를 운영 중인 13개 시·도*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실시 중인 기존 재정 지원 사업은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였음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북특별자치도는 자료 미제출. 이하 동일)
10	안 제17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 지원)	×	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별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 등을 기회발전특구규제 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센터에 재정을 보조·출연하여 입주기업이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제정규정을 고려할 때 해당 센터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¹⁴⁾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규제특례를 입주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및 법률에 대한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수요와 필요인력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3) 참고로, 답변 자료를 제출한 일부 시·도는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개발 등이 먼저 추진되고 이후 해당 구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이므로, 기존에 산업단지개발 등을 위해 실시되는 재정 지원 사업은 “기회발전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관련 사업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함

14) 안 제17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역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산업융합 촉진법」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6.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8조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	시·도에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을 두고 지방비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지방재정 지출 증가분은 기회발전특구를 운영 중인 각 시·도에 설치되는 재단의 기능과 주요 사업 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참고로, 기회발전특구를 운영 중인 13개 시·도는 기회발전특구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재단은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였음
12	안 제19조 (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	×	안 제18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이나 그 밖의 기관을 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특구 내 입주하는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지방재정 지출 증가분은 시·도별 기업융합 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사업 내용과 해당 센터에 대한 시·도의 재원 투입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참고로, 기회발전특구를 운영 중인 13개 시·도는 현재 특구 내 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문기관 지정 및 재정 지원 사업은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였음
13	안 제20조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	기회발전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정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용 수요에 따른 설치 대상 시설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14	안 제21조 (기회발전특구 성과의 평가 등)	○	-
15	안 제2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체육시설 등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이나,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수와 감면 대상자, 시설 이용량 및 감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6	안 제26조 (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사용허가 및 대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종류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재정수입 감소 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
17	안 제27조 (부담금 등의 감면)	×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를 추계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개정 시기* 및 부담금 감면 수준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안 제27조¹⁵⁾는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의 적용을 위해서는 부담금의 근거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안 제27조 각 호에 열거된 근거 법률 중 현재 기회발전 특구 관련 사업시행자를 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음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8.28. 보도 자료¹⁶⁾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를 규정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¹⁷⁾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18	안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사무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 위탁사업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비용추계에 필요한 위임·위탁 대상 사업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알 수 없어 필요인력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5) 안 제2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비용·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이하 각 호 생략)

1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8.28.),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중

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2024.6.17.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8조) 및 기회발전특구 성과 평가(안 제21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8조18)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안 제21조19)에 따른 성과 평가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므로, 소요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8조)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비용으로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²⁰⁾에 따라 수립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기회발전특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이와는 별도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시행 중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이 2027년에 종료되므로, 제정안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와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은 2027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연구용역비는 다른 부처가 종합계획 수립 시 수행한 연구용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은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2027년에만 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18) 안 제8조(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9) 안 제21조(기회발전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2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 (안 제21조) 기회발전특구의 운영 성과 평가 비용으로는 성과 지표 등 성과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이를 바탕으로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성과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다른 부처가 수행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용역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평가 제도 운영 비용은 기회발전특구와 일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규제자유특구²¹⁾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에 성과 평가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가정한 2026년에만 1회 발생하고, 평가 제도 운영 비용은 2026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 안 제21조제3항²²⁾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의 성과 평가 결과가 차년도(또는 차차년도) 예산 편성에 활용될 것임을 전제로 평가 제도 운영 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부칙²³⁾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2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구역에 대하여 지정되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규제 완화나 일부 또는 전부 제외, 규제 신속확인 및 실증특례 등이 지원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각 목 생략)

22) 안 제21조(기회발전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23) 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안 제8조)

- 종합발전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사례로서 타 부처가 수행한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의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2027년에만 국가재정으로 2억 3,500만원(연평균 4,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²⁴⁾

[표 2]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행정안전부	2024	459
국립5.18민주묘지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국가보훈부	2022	79
어린이 등 미래세대를 위한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환경부	2020	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안 제8조)	-	235	-	-	-	235	47

24) 추계연도가 2027년임을 고려하여 준용 사례에 물가 및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산출

나. 기회발전특구 성과 평가(안 제21조)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성과 평가 비용은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총 19억 6,200만원(연평균 3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성과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타 부처가 수행한 성과평가 관련 연구용역의 평균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2026년에만 국가재정으로 1억 4,200만원(연평균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²⁵⁾
 - 성과 평가 제도 운영 비용은 유사한 사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 중인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평가 예산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국가재정으로 매년 3억 6,400만원씩 총 18억 2,000만원(연평균 3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표 4] 성과 평가 관련 연구용역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소관부처	실시연도	예산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평가 지표개발 및 성과평가	행정안전부	2024	30
2021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	국토교통부	2022	267
도시 새뜰마을 민관협력사업 성과평가 및 홍보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20	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5) 추계연도가 2027년임을 고려하여 준용 사례에 물가 및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산출

[표 5]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성과 평가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명(회계, 코드) -내역사업명	예산	비고(편성근거)
중소 벤처 기업부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일반회계, 3335-304)	(18,395)	-
	-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4,489)	-
	- 특구운영성과평가	364	· 특구운영성과평가: 364백만원 - 운영성과보고서 제작: 14개 특구×18백만원 = 252백만원 - 평가위원회 개최: 10명×14개 특구×2회 × 0.3백만원 = 84백만원 - 안전제작: 14개 특구×2회×1백만원 = 28백만원

자료: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 기회발전특구 성과 평가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성과 평가 방법 개발 연구용역	142	-	-	-	-	142	28
성과 평가 제도 운영	364	364	364	364	364	1,820	364
합계	506	364	364	364	364	1,962	39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

[참고자료 1]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현황

시·도	시·군·구	지정일 (2024년)	입지	분야·주요 기업	면적 (만평)
부산	동구	6.25.	북항재개발 2단계지역	금융 ▶ (주)코스콤 등 4개사	21.9
	남구	"	문현금융단지	금융 ▶ 부산BDX(주) 등 24개사	0.8
	기장군	12.27.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 ▶ (주)아이큐랩 등 7개사	16
	기장군	"	동부산E-PARK 일반산단 (조건부 지정)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 ▶ (주)금양 등 11개사	31.2
	강서구	"	부산·진해 경자구역 미음지구	자동차부품 등 ▶ 신성ST(주) 등 3개사	10.3
대구	수성구	6.25.	수성알파시티	데이터센터, ICT/SW 등 ▶ SK 컨소시엄 등 7개사	7.7
	달성군	"	대구국가산단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 ▶ (주)엘엔에프 등 7개사	64.9
	북구	"	금호워터폴리스	전기차·로봇 부품 등 ▶ (주)동보 등 2개사	10.1
광주	광산구	11.6.	빛그린 국가산단	자동차부품 ▶ (주)DH오토웨어 등 5개사	20.7
	북구	"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I, 데이터센터 등 ▶ NHN클라우드(주) 등 14개사	15.8
대전	유성구	6.25.	안산 첨단국방산단 (조건부 지정)	방산 ▶ (주)썬트렉아이 등 42개사	48.1
	유성구	"	원촌 첨단바이오혁신지구	바이오, 의약 ▶ (주)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 등 36개사	12.2
울산	남구	11.6.	울산미포국가산단	전기차 등 ▶ 현대자동차(주) 등 4개사	37
	울주군	"	하이테크벨리 일반산단	이차전지 ▶ 삼성SDI(주) 등 3개사	39.4
	울주군	"	온산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석유화학 ▶ 고려아연(주) 등 6개사	42.8
	남구	"	울산북신항, 배후단지	LNG 저장탱크 등 ▶ SK가스(주) 등 2개사	7.7
세종	집현동	11.6.	스마트 도시첨단산단	ICT/SW, 로봇 등 ▶ (주)엘리스그룹 등 18개사	24.9
	연서면	"	스마트국가산단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 (주)캠트로닉스 등 6개사	27.2
	전동면	"	전동일반산단	의약품 등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등 4개사	4.2

시·도	시·군·구	지정일 (2024년)	입지	분야·주요 기업	면적 (만평)
강원	홍천	11.6.	홍천 도시첨단산단	의약품 등 ▶ (주)씨티씨바이오 등 11개사	0.6
	원주	"	원주 부론일반산단	배터리 모듈 등 ▶ 나노인텍(주) 등 8개사	11.8
	강릉	"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의약품 등 ▶ (주)파마리서치 등 14개사	18.5
	동해	"	동해 북평국가산단	수소 등 ▶ (주)금강씨엔티 등 7개사	4.5
	삼척	"	수소특화일반산단	수소 등 ▶ 디엘(주) 등 20개사	2.9
	영월	"	녹전리 핵심소재산단	광물 ▶ (주)알몬티대한중석 등 2개사	4.7
충북	제천	11.6.	제2, 4 일반산단	식품·자동차부품 ▶ (주)일진글로벌 등 2개사	27.2
	보은	"	보은 제3일반산단	반도체 관련 ▶ (주)티이엠씨 등 3개사	25.7
	음성	"	상우일반산단	반도체 ▶ (주)DB하이텍 등 1개사	12.5
	진천	"	메가폴리스 일반산단	이차전지 소재 ▶ (주)LG화학 등 1개사	44.2
충남	예산	11.6.	내포농생명 일반산단	바이오 의약품 등 ▶ (주)셀트리온 등 5개사	40.5
	보령	"	고정 국가산단 (조건부 지정)	수소 ▶ SK E&S 등 1개사	24.3
			냉열특화 일반산단	식품 ▶ 대천김(주) 등 4개사	20
	서산	"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단	석유화학 등 ▶ SK인천석유화학(주) 등 2개사	23.4
	논산	"	국방국가산단	방산 ▶ (주)KDI 등 6개사	19.6
	부여	"	부여 일반산단, 부여 은산2농공단지	이차전지 관련 ▶ HK power(주) 등 5개사	15.8
전북	전주	6.25.	친환경첨단복합산단, 탄소소재국가산단 등	탄소섬유 ▶ (주)효성첨단소재 등 16개사	29.9
	익산	"	익산 제3일반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동물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 (주)JBKLAB 등 16개사	21.7
	정읍	"	첨단과학일반단지		
	김제	"	지평선 제2일반산단, 백구 일반산단	자동차부품, 특장차 ▶ (주)대승 등 15개사	36.9

시·도	시·군·구	지정일 (2024년)	입지	분야·주요 기업	면적 (만평)
전남	목포· 해남	6.25.	목포신항 배후단지, 해남 화원조선산단	해상풍력 ▶ 베스타스 등 2개사	18.7
	광양· 여수· 순천	"	광양국가산단(동호안), 율촌 제1일반산단, 세풍 일반산단	이차전지 ▶ 포스코퓨처엠 등 8개사	46.7
	순천	"	순천만 국가정원	문화콘텐츠 ▶ ㈜로커스 등 2개사	3.1
	여수	"	묘도 항만 재개발사업지 (일부구역 조건부 지정)	LNG터미널, 수소산업 ▶ 동북아LNG허브터미널(주) 등 5개사	36
	해남	"	기업도시 솔라시도 (조건부 지정)	데이터센터 ▶ SPC(삼성물산 등)	20
경북	구미	6.25.	구미국가산단 1~5단지	반도체·이차전지·방산 ▶ LG이노텍(주) 등 15개사	57
	안동	"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단	바이오 ▶ SK바이오사이언스(주) 등 3개사	7
	포항	"	블루밸리 국가산단, 영일만 일반산단	이차전지 ▶ 포스코퓨처엠 등 8개사	77
	상주	"	청리 일반산단	이차전지 ▶ SK머티리얼즈G14(주) 등 4개사	11
경남	고성	6.25.	양촌·용정 일반산단	해상풍력 ▶ SK오션플랜트 등 1개사	47.6
	통영	12.27.	도산 복합해양관광단지 (조건부 지정)	관광리조트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1개사	67.2
	창원	"	창원 국가산단	수소 모빌리티 등 ▶ 로만시스(주) 등 16개사	17.9
제주	서귀포	6.25.	하원 테크노캠퍼스	우주항공 ▶ 한화시스템 등 2개사	9.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4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



주: 2024.12.27. 추가 지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강서구, 경상남도 통영시 및 창원시는 제외되어 있음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정보자료-정책자료-“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를 소개합니다.”(2024.11.12.)

[참고자료 2] 지방투자 재정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코드)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5 예산 (추경) ¹⁾
산업 통상 자원부	지역균형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2-305)	-	(16,528)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 지방투자기업의 적기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 훈련비 등을 지원	1,500
	지역투자촉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3-306)	· 지방투자기업(지방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등)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입지·설비 및 고용보조금 으로 지원(국비+지방비 매칭) · 지방투자기업 현장조사 및 보조금 정산 지원과 보조 사업을 통한 성과분석 및 법률자문 지원	221,831
	지역투자촉진(세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3-307)	· 상동(세종특별자치시 별도 계정)	4,281
	합계		227,612 ²⁾

주: 1) 국비예산액(지역투자촉진 2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율은 지역에 따라 45~75% 적용*)

* 균형발전상위지역: 45%, 균형발전중위지역: 65%, 균형발전하위지역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75%

2) 지역균형발전지원 사업의 경우 일부 내역만 제정규정의 내용에 부합하여 내역사업명 및 내역사업
예산액을 기준으로 합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3] 기회발전특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코드) -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2025 예산 (추경)
산업 통상 자원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2-332)	-	(5,653)
	-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	·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의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특구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지원(재직자 기술교육 및 지역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3,500 ¹⁾

주: 1) 국비 예산액[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율은 66.6%(사업비의 3분의 2 지원)]

1. 각 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제정규정의 내용에 부합하여 내역사업명 및 내역사업 예산액을 기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4] 기회발전특구 조세 지원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소득·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감면)
취득·재산세	· 수도권에서 특구(비수도권)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이자·배당소득세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 기간(10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2024.8.28.)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투자 지속 유치 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